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1199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대륙석재

6. E

7. F

8.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변론 종결** 2016. 7. 26.

**판결 선고** 2016. 8. 23.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93,985원 및 그 중 74,291,911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1) 피고 D 사이에 2014. 10. 28. 체결된,

(2) 피고 주식회사 대륙석재 사이에 2014. 11. 5. 체결된,

(3) 피고 E 사이에 2014. 12. 1. 체결된,

(4) 피고 F 사이에 2014. 12. 4.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사이에 2014. 1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파산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21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93,985원 및 그 중 74,291,911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에 대한 청구; 주문 제2, 3항과 같다.

### 이 유

####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03. 5. 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보증기한 2004. 5. 8.(이후 2014. 5. 2.까지 매년 1년씩 연장), 보증금액 170,000,000원(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76,636,000원까지 감축)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에 2014. 11. 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74,291,911원(=원금 72,743,000원+이자 1,548,9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702,07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93,985원(=대위변제금 74,291,911원+법적 절차비용 702,0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4,291,9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5.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갑 6호증,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               |                                       |               |              |
|---|------|---------------|---------------------------------------|---------------|--------------|
| 1 | 1부동산 | 2014. 10. 28.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와 2014. 10. 29. 접수 제68695호 | 피고 D          | 80,000,000원  |
| 2 | 1부동산 | 2014. 11. 5.  | 같은 등기와 2014. 11. 6. 접수 제70974호        | 피고 주식회사 대륙석재  | 135,000,000원 |
| 3 | 1부동산 | 2014. 12. 1.  | 같은 등기와 2014. 12. 1. 접수 제77603호        | 피고 E          | 71,900,000원  |
| 4 | 1부동산 | 2014. 12. 4.  | 같은 등기와 2014. 12. 4. 접수 제79119호        | 피고 F          | 22,000,000원  |
| 5 | 2부동산 | 2014. 11. 14. |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21483호 | 피고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 16,000,000원  |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2014. 11. 4.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3.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피고 B은 위 각 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감정가 321,000,000원의 1부동산, 공시지가 12,525,000원의 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비롯한 금융권 채무 약 3억 5천만 원(갑 7호증), 주식회사 티엠아이대부에 대한 4,500만 원(갑 6, 8호증), 피고 주식회사 대륙석재에 대한 135,000,000원(위 피고의 답변서), 피고 D에 대한 8,000만 원(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약 6억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일부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참조). 피고 B이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 주식회사 장원레미콘과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역시 위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3) 1부동산의 매각 1부동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갑 10호증).

#### **나.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자신들은 피고 B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A가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지체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 B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라 1~3, 올라 1~4(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깨트리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① 피고 B이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 주식회사 장원레미콘과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피고 D, 주식회사 대륙석재, E, F은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며, 피고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판사이의진**

별지